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60호 2025.12.1.(월)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21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준공 고시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1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재 열람·공고 — 33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구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

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2차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직원의 책무) 소속직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전·후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여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감사, 인사,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결됨으로써 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자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종결)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16조제4항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16조제4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8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같은 기관에서 연간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고충 상담원	과장
						※ 상담종결 또는 고충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기록			

[별지 제3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221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준공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4호(2024. 1.2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면 적: 76,26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준공 내역
 - 기반시설정비
 - 보행로 노면표시, 야간통행 시인성 확보, 가정여중 정문일대 보도 및 펜스 재정비
 - 가좌공원 인근 도로 경계석 조명 설치

-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약 2,241m
- 공동이용시설
 - 위 치: 가좌동 311-6
 - 규 모: 연면적 252.9㎡, 1개동, 지상2층
 - 층별시설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구 분	프로그램	가좌동 311-6	
지상1층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지상2층	특화거점 포레스트 센터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2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길 8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1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1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막동 1299-6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길 8 (당막동)	20200720	푸른 물이 흐르는 맑은 시내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91-23	인천광역시 서구 목지로 5 (불로동)	20210913	목지마을의 자연지명을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8-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921번길 20 (원당동)	20210913	원당대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9,21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05-14	인천광역시 서구 당곡로4번길 9 (원당동)	20200720	당곡로에서 40미터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08-6	인천광역시 서구 당곡로24번길 46 (원당동)	20200720	당곡로에서 240미터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4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3-502호선, 사업명: 왕길동 원당대로 일원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94-9번지 ~ 왕길동 20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2호선)

○ 명 칭: 왕길동 원당대로 일원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사업면적: 1,534.7m²

- 규모: L=203m, B=6~10m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 8. 열람 장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장소: 인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칭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변경없음				1,535	1,535					
1	변경없음	왕길동	194-9	대	17.0	17.0	배**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신정동, *****아파트)			
2	변경없음	왕길동	197-5	도	77.0	77.0	공	서구청			
3	변경없음	왕길동	196-21	장	15.0	15.0	공	서구청			
4	변경없음	왕길동	196-17	장	277.0	277.0	공	서구청			
5	변경없음	왕길동	196-22	도	31.0	31.0	공	서구청			
6	변경없음	왕길동	196-24	도	23.0	23.0	공	인천광역시			
7	변경없음	왕길동	196-35	도	61.0	61.0	공	인천광역시			
8	변경없음	왕길동	196-19	도	1.0	1.0	공	서구청			
9	변경없음	왕길동	196-16	장	195.0	195.0	공	서구청			
10	변경없음	왕길동	196-20	도	262.0	262.0	공	인천광역시			
11	변경없음	왕길동	196-34	도	4.0	4.0	공	인천광역시			
12	변경없음	왕길동	산83-21	임	63.0	63.0	공	서구청			
13	변경없음	왕길동	산83-22	임	5.0	5.0	공	서구청			
14	변경없음	왕길동	산83-20	임	133.0	133.0	공	서구청			
15	변경없음	왕길동	205-7	도	30.0	30.0	공	서구청			
16	변경없음	왕길동	205-6	답	89.0	89.0	공	서구청			
17	변경없음	왕길동	204-58	도	2.0	2.0	공	인천광역시			
18	변경없음	왕길동	206-6	답	3.0	3.0	공	서구청			
19	변경없음	왕길동	197-6	대	2.0	2.0	공	서구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또는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기정	왕길동	196-30	장	20	20	주식회사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 (십정동)			
	변경	왕길동	196-30	장	20	20	공	서구청			
21	기정	왕길동	196-31	장	120	120	주식회사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 (십정동)			
	변경	왕길동	196-31	장	120	120	공	서구청			
22	변경없음	왕길동	196-26	장	62.0	62.0	공	서구청			
23	변경없음	왕길동	196-23	장	3.0	3.0	공	서구청			
24	기정	왕길동	196-32	장	40	40	주식회사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 (십정동)			
	변경	왕길동	196-32	장	40	40	공	서구청			
25	변경없음	왕길동	196-27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26	변경없음	왕길동	196-14	도	7.0	7.0	공	인천광역시			
27	변경없음	왕길동	196-33	도	11.0	11.0	공	인천광역시			
28	변경없음	왕길동	196-25	장	81.0	81.0	공	서구청			
29	변경없음	왕길동	산83-24	임	25.0	25.0	공	서구청			
30	변경없음	왕길동	산83-23	임	37.0	37.0	공	서구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왕길동	197-5	건물(점포)	벽돌블럭조	163	59.7	m ²	공	서구청			
2	왕길동	197-5	차양	1식	1	1	식	공	서구청			
3	왕길동	197-5	간판	1식	1	1	식	공	서구청			
4	왕길동	197-17, 196-26	건물(공장)	블럭조	854.3	76.4	m ²	공	서구청			
5	왕길동	197-17, 196-26	건물(사무실)	판택	66.7	35.7	m ²	공	서구청			
6	왕길동	196-17	수목	측백나무 외	6	6	그루	공	서구청			
7	왕길동	196-17, 196-21, 196-26	건물(사무실)	블럭조	175.9	175.9	m ²	공	서구청			
8	왕길동	196-17, 196-21, 196-26	정화조	FRP 30인용	1	1	식	공	서구청			
9	왕길동	196-24	전신주		1	1	본	공	서구청			
10	왕길동	196-24	체신주		1	1	본	공	서구청			
11	왕길동	196-13	메쉬헨스	H=1.2	54	54	m	공	서구청			
12	왕길동	196-21	간판	H=0.8, W=5.2	1	1	식	공	서구청			
13	왕길동	196-13, 196-17, 196-26	바닥콘크리트	1식	215.3	215.3	m ²	공	서구청			
14	왕길동	196-17, 196-26	전기설비	25kw	1	1	식	공	서구청			
15	왕길동	196-17, 196-21, 196-26	전기설비	25kw	1	1	식	공	서구청			
16	왕길동	196-17, 196-26	에어컨, 온풍기	이전비	1	1	식	공	서구청			
17	왕길동	196-22	수도		1	1	식	공	서구청			
18	왕길동	196-24	체신주		1	1	본	공	서구청			
19	왕길동	196-10	전신주		1	1	본	공	서구청			
20	왕길동	196-10	체신주		1	1	본	공	서구청			
21	왕길동	196-10	가로등		1	1	주	공	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4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3-1호선, 3-2호선, 3-3호선, 사업명: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9(원창동 35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
 - 명칭: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면적
 - 당초: 1,389㎡

- 변경: 1,391.3m²

○ 규모

- 소로3-1호선: L=218m, B=4m

- 소로3-2호선: L=122m, B=4m

- 소로3-3호선: L= 8m, B=4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장소: 인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칭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기정				1,408	1,408					
	변경				1,391.3	1,391.3					
1	변경없음	원창동	342-17	전	5	5	공	서구청			
2	변경없음	원창동	342-18	전	66	66	공	서구청			
3	변경없음	원창동	342-19	전	63	63	공	서구청			
4	변경없음	원창동	342-20	전	7	7	공	서구청			
5	변경없음	원창동	342-21	전	4	4	공	서구청			
6	변경없음	원창동	342-22	전	3	3	공	서구청			
7	변경없음	원창동	343-10	전	3	3	공	서구청			
8	변경없음	원창동	343-11	전	55	55	공	서구청			
9	변경없음	원창동	343-12	전	6	6	공	서구청			
10	변경없음	원창동	343-18	전	4	4	공	서구청			
11	변경없음	원창동	343-19	전	1	1	공	서구청			
12	변경없음	원창동	343-20	전	1	1	공	서구청			
13	변경없음	원창동	343-21	전	10	10	공	서구청			
14	변경없음	원창동	343-22	전	2	2	공	서구청			
15	변경없음	원창동	343-23	전	4	4	공	서구청			
16	변경없음	원창동	343-24	전	48	48	공	서구청			
17	변경없음	원창동	343-25	전	5	5	공	서구청			
18	변경없음	원창동	343-26	전	1	1	공	서구청			
19	기정	원창동	343-27	전	102	102	공	서구청			
	변경	원창동	343-27	전	110	110	공	서구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또는칭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변경없음	원창동	344-2	대	50	50	공	서구청			
21	변경없음	원창동	345-6	잡	65	65	공	서구청			
22	변경없음	원창동	353-14	대	16	16	공	서구청			
23	변경없음	원창동	353-15	대	8	8	공	서구청			
24	변경없음	원창동	353-18	대	18	18	공	서구청			
25	변경없음	원창동	353-19	대	7	7	공	서구청			
26	변경없음	원창동	353-20	대	6	6	공	서구청			
27	변경없음	원창동	353-21	대	30	30	공	서구청			
28	변경없음	원창동	353-22	대	36	36	공	서구청			
29	변경없음	원창동	353-23	대	33	33	공	서구청			
30	변경없음	원창동	354-6	대	16	16	공	서구청			
31	변경없음	원창동	354-9	대	40	40	공	서구청			
32	변경없음	원창동	354-10	답	198	198	공	서구청			
33	변경없음	원창동	354-11	대	24	24	공	서구청			
34	변경없음	원창동	354-12	대	29	29	공	서구청			
35	변경없음	원창동	356-19	도	38	38	공	서구청			
36	기정	원창동	375-11	도	120	120	공	서구청			
	변경	원창동	375-11	도	124.7	124.7	공	서구청			
37	기정	원창동	375-12	도	160	160	공	서구청			
	변경	원창동	375-12	도	109	109	공	서구청			
38	기정	원창동	375-13	도	127	127	공	서구청			
	변경	원창동	375-13	도	127.6	127.6	공	서구청			
39	변경없음	원창동	375-14	도	18	18	공	서구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원창동	343-24	건물	A=13.0m ²	1동		김정*	인천시 서구 면개포로 **번길 *			
	변경	원창동	343-24	건물	A=13.0m ²	1동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2	기정	원창동	353-21	건물	A=15.0m ²	1동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변경	원창동	353-21	건물	A=15.0m ²	1동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3	기정	원창동	342-18	비닐 하우스	A=42.0m ²	1동		박장*	인천시 서구 가정동 ***.*			
	변경	원창동	342-18	비닐 하우스	A=42.0m ²	1동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51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다시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하였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47번지 일원
- 결정(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331	11.7 (11.7~20)	집산 도로	12	-	중1-694	일반 도로	-	-	근린공원 (연희공원)과 중복결정(83㎡)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1-331호선	◦ 소로1-331호선 신설 - 폭원: 11.7m(일부구간:20m) - 연장: 12m - 면적: 180㎡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2020.12.)에 따라 경서3구역 지구 외 도로 (중1-694호선)와 연희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연희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992,705.3	-	992,705.3	1970. 7.20. (건고344호)	도로 (소로1-331호선)와 중복결정(83㎡)

-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면적: 83㎡)	◦연희공원 부출입구 연결도로(소로1-331호선) 결정에 따른 중복결정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